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5일

3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14조(특별휴가) 제1항의 규정 중 오자를 정정하고,
- 제14조제4항의 소속직원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조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오자 수정(안 제14조 제1항 관련)
  - “별표 3”을 “별표 4”로 정정 \* 경조사별 휴가일수표
  - 별표 4 관련조문 정정

○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부여일수 확대(안 제14조 제4항)

-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 : 15일 → 20일

-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: 15일 → 20일

## 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규정중 오자를 정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